

법인설립 허가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20일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			전화번호	
법 인	명칭			전화번호	
	소재지				
대표자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			전화번호	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설립발기인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)	수수료 없음
	2. 정관 1부 3. 재산목록(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)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.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.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. 창립총회회의록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) 1부 ※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입증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.	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(건물) 등기부 등본	

처리절차

